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42
----------	------

2021년 12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김태수 의원(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 12월 2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공간에 문화·여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2) 운영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3)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4 신설).
- (4) 문화·여가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보다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인력 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신설과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제공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임.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이 가상재난의 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올바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의식 및 재난대처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광나루안전체험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음.([표1] 참조)

[표1] 시민안전체험관 주요 현황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개관일	2003. 3. 6.	2010. 5. 25.
위 치	광진구 능동로 238 (어린이대공원 옆)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 (보라매공원 내)
시설규모	3/1층, 연면적 5,444.5㎡, 대지 5,041㎡	3/1층, 연면적 8,020㎡, 대지 4,753㎡
시설건립 총 비용	205억 4,900만원	414억 5,200만원
연간운영비 (2021년)	5억원	3억원
이용대상	어린이 층 (6세 이상)	청소년 이상 (14세 이상)

상 시 근무자수	[총 25명] ▷ 운영분야 : 11명(소방 5, 용역 6) ※ 온라인체험 진행으로 인원 감축 ▷ 청사관리 : 8명(공무6 촉탁2) ▷ 사회복지 : 6명(안전관리 등)	[총 22명] ▷ 운영분야 : 9명(소방 9) ※ 온라인체험 진행으로 인원 감축 ▷ 청사관리 : 9명(공무5 촉탁4) ▷ 사회복지 : 4명(안전관리 등)
체험코스별 소요시간	▷ 재난체험 : 2시간 ▷ 전문체험 : 1~3시간 (※ 응급처치실습) ▷ 교통체험 : 1시간 ▷ 자유관람 : 시간제한 없음 (※ 새싹어린이안전체험, 미래소방관 등)	▷ 재난체험 : 2시간 ▷ 전문체험 : 1~3시간 (※ 소방시설실습, 응급처치실습) ▷ 어린이 : 1시간 ▷ 자유관람 : 시간제한 없음 (※ 소방역사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장)
코로나 발생이후 운영 현황	비대면 온라인(On-tact) 안전체험 운영 ▷ 재난체험 : 1시간 30분 ▷ 어린이체험 : 1시간 ▷ 전문체험 : 2시간(※전문 응급처치실습) ▷ 자유관람 : 방역 관계로 제한	비대면 온라인(On-tact) 안전체험 운영 ▷ 재난체험 : 1시간 30분 ▷ 어린이체험 : 1시간 ▷ 전문체험 : 2시간(※전문 응급처치실습) ▷ 자유관람 : 방역 관계로 제한
체험관 이용방법	사전 예약(인터넷 또는 전화) + 자유관람	사전 예약(인터넷 또는 전화) + 자유관람

-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시민안전교육을 이어나가고자 2021.2.22.일부터 비대면 온택트(On-tact) 체험교육을 매주 월~금, 1일 4~5회 운영 중에 있으며,
- ‘광나루안전체험관’은 일평균 341명,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일평균 229명의 온라인 안전체험 이용자가 각각 방문하고 있으며, 누적 체험객 130,524명을 기록(2021.11.30.기준)하고 있음. ([표2] 참조)

[표2] 시민안전체험관 비대면 온라인(On-tact)체험 운영실적 (2021. 11. 30. 기준)

구분	계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계	130,524	40,692	27,879	9,409	49,710	354	2,463	17	
인원(명)	광나루	78,149	25,324	15,688	5,144	29,941	354	1,681	17
	보라매	52,375	15,368	12,191	4,265	19,769	0	782	0
비율(%)	100	31.2	21.4	7.2	38.1	0.3	1.9	0.0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시민안전체험관 인력 배치 및 운영 관련(안 제2조의2 외 2개조항)

- 안 제2조의2~4의 가지조문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인력배치(안 제2조의2),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2조의3), 안전지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안 제2조의4) 등과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표3]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인력배치)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인력 2.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 3.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신 설>	제2조의3(교육 훈련) 시장은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원 포함)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체험관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제3호(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제4호(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준 등), 제5호(체험교육 운영기준) 등에 관해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 본 개정안이 [별표1]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조항 중 일부 조항만을 인용하여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례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굳이 조례에 일부를 인용하기보다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는 기존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나. 문화·여가 공간의 제공 관련(안 제12조의2)

- 안 제12조의2는, 시장에게 체험관의 주요시설 중 일부를 체험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표4]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문화·여가공간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시민안전체험관 특성상 지진체험실, 화재안전체험실 등 재난체험 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강의실의 경우는 운영이 종료된 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서울시 공공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개정안에서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범위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체험관 내에는 관리자의 안내 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좀 더 명확하게 장소적인 범위를 추가해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며,
-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 및 제9조¹⁾가 삭제되어 조례 내에 공백이 존재함에 따라 현행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 번호를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2는 가지조문보다는 제11조로 독립시키는 한편, 현행 제13조(규칙)의 조문번호 역시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짐. ([표5] 참조)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삭제 <2007.10.01>
제9조 삭제 <2007.10.01>

[표5] 현행 및 개정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 삭제 <2007.10.01.>	제8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 및 물품관리) ----- ----- -----(현행 제10조와 같음)---- ----- -----.
제9조 삭제 <2007.10.01.>	제9조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가입) ----- ----- -----(현행 제11조와 같음)---- ----- -----.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 ----- ----- -----(현행 제12조와 같음)---- ----- -----.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여가공간 제공) <u>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u>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제12조 (현행과 같음)	

<p>고 인정하는 시설</p> <p>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신설> 제12조의2(문화·여가공간 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제 11조로 이동></p>
<p>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12조(규칙)----- ----- -----(현행 제13조와 같음)---- -----.</p>

붙임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붙임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화재안전 체험실
	시설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보행안전 체험실
	자동차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기후성 재난 체험실
	지질성 재난 체험실
보건안전	응급처치 체험실

-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갖추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안전 체험실, 작업안전 체험실, 여가활동 체험실, 노인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버스안전 체험실, 이륜차안전 체험실, 지하철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생물권 재난안전 체험실(조류독감, 구제역 등)

사회기반안전	화생방·민방위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범죄안전	미아안전 체험실, 유괴안전 체험실, 폭력안전 체험실, 성폭력안전 체험실, 사기범죄 안전 체험실
보건안전	중독안전 체험실(게임·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전 체험실, 식품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절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적절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 다.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다. 시·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라. 시·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 마.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 가.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

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안 제12조의2에서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범위를 문화·여가 공간의 활용만으로 국한하고 있음. 교육 및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정진술 위원)

답변) 기존에 교육 및 회의 공간으로 제공을 했던 사례가 있던 만큼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김시철 소방행정과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의 신설 내용 중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조 번호 체계를 일괄 정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42
----------	------------

제안일자 : 2021년 12월 20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시민안전체험관의 인력배치,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이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체험관 내에는 관리자의 안내 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제8조 및 제9조가 삭제되어 조례 내에 공백이 존재함에 따라 조 번호 체계를 일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민안전체험관의 인력배치,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 나. 시민안전체험관 내에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2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 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 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 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 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 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 전교육을 수행한다.</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u>제2조의2(인력배치) 시장은 체험 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u>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 표 1 제3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 는 운영인력 2.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 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 3.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 및 시설관리인력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 해 필요한 인력</p>	<p><삭제></p>
<p><신설></p>	<p><u>제2조의3(교육 훈련) 시장은 체 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 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 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신설></p>	<p><u>제2조의4(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 할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원</u></p>	<p><삭제></p>

<p>제8조 삭제 <2007.10.01.></p>	<p><u>포함)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9조 삭제 <2007.10.01.></p>	<p>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재산 및 물품관리) ----- ----- -----(현행 제10조와 같음)---- ----- ----- -----.</p>
<p>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p> <p>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9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험가입) ----- ----- -----(현행 제11조와 같음)---- ----- -----.</p>
<p>제10조 (현행과 같음)</p> <p>①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10조 (현행과 같음)</p>	<p>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 ----- -----(현행 제12조와 같음)---- ----- ----- -----.</p>
<p>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1조 (현행과 같음)</p>	<p>제11조(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점 2. 기념품점 	<p>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0조로 이동></p>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제12조의2(문화·여가공간 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로 이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규칙)-----

-----(현행 제13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삭제 <2007.10.01.></p>	<p>제8조(재산 및 물품관리) ----- -----(현행 제10조와 같음)----- ----- -----.</p>
<p>제9조 삭제 <2007.10.01.></p>	<p>제9조(보험가입) ----- -----(현행 제11조와 같음)----- -----.</p>
<p>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 -----(현행 제12조와 같음)----- ----- ----- ----- ----- -----.</p>
<p>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9조로 이동></p> <p>제11조(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p>	<p><제10조로 이동></p>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규칙)-----

-----**(현행 제13조와 같음)**-----.